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 확대 등 〉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5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 확대 등 .....      | 3  |
| 2.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금지 .....      | 11 |
| 3.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 추가 ..... | 17 |
| ※ 참고자료 .....                            | 21 |
|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                   | 21 |
| 2. 환경정보공개 개요 .....                      | 24 |
| 3.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       | 26 |

## I. 제안경위

2025년 1월 8일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성·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등).

### Ⅲ. 검토의견

####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 확대 등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재료·제품과 함께 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수행 과정을 추가하여 “제품 등의 환경성”으로 정의를 변경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및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의 대상 범위를 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수행 과정까지 확대하고, ②온실가스 감소·처리 기술을 환경 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등).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 1. -----<br>-----<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p> <p>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p> <p>(1) ~ (5) (생략)</p> <p>&lt;신설&gt;</p> <p>나. ~ 바. (생략)</p> <p>2. ~ 4. (생략)</p> <p>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p> <p>6.·7. (생략)</p> <p>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u>제조판매업자</u>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u>제품의 환경성</u>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p> | <p>-----.</p> <p>가. -----</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온실가스</u></p> <p>나. ~ 바.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제품 등의 환경성”이란 재료나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등 전 과정,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u>사업수행</u> -----</p> <p>-----</p> <p>-----</p> <p>-----.</p> <p>6.·7.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 <u>생산자</u>, <u>판매자</u>, <u>제공자</u> 등의 <u>사업자</u>-----</p> <p>----- <u>제품 등</u>-----</p> <p>-----</p> <p>-----</p> <p>-----</p> |

| 현행                                                                                                                                                                                                                                                                                                                                                                                                                                                                                                         | 개정안                                                                                                                                                                                                                                                                                                                                                                                              |
|------------------------------------------------------------------------------------------------------------------------------------------------------------------------------------------------------------------------------------------------------------------------------------------------------------------------------------------------------------------------------------------------------------------------------------------------------------------------------------------------------------|--------------------------------------------------------------------------------------------------------------------------------------------------------------------------------------------------------------------------------------------------------------------------------------------------------------------------------------------------------------------------------------------------|
| <p>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u>제품</u>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 중 <u>제품</u>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u>제품</u>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br/>----- <u>제품</u> 등-----<br/>-----.</p> <p>② -----<br/>----- <u>제품</u> 등-----<br/>-----<br/>-----<br/>-----<br/>-----<br/>-----.</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 <u>제품</u> 등-----<br/>-----<br/>-----<br/>-----<br/>-----<br/>-----<br/>-----.</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u>제품의</u>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br>-----<br>-----<br>----- <u>제품 등의</u> -----<br>-----<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u>제품의 환경성</u> 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br>-----<br>-----<br>-----<br>----- <u>제품 등의 환경성</u> -----<br>-----<br>-----. |
| ② ~ ⑦ (생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벌칙) -----<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u>제품의</u>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                                                                                                                   | 4. ----- <u>제품 등</u> -----                                                                               |

| 현행                                                            | 개정안                                                                          |
|---------------------------------------------------------------|------------------------------------------------------------------------------|
| 를 한 자                                                         | -----                                                                        |
| 4의2. ~ 6. (생략)                                                | 4의2. ~ 6. (현행과 같음)                                                           |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7조(과태료) ① -----<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u>제품의</u>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br>---- <u>제품 등</u> -----<br>-----<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 <b>부칙</b>                                                                    |
|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하며<sup>1)</sup>,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라 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3)</sup>.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에 한정되어 있어, 제품이 아닌 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수행 활동이나 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환경성과 관련한 거짓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현행 ‘제품의 환경성’의 정의에 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 과정을 추가하여 ‘제품 등의 환경성’으로 변경하고, ②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 과정에 대하여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③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및 사전검토,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에도 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 과정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환경성 개선 노력 제고와 그린워싱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3) < 참고자료 2.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

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관리 대상(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및 사전검토)에 서비스 제공 과정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표시”(제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광고”(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규정<sup>4)</sup>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 및 “광고”의 대상을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sup>5)</sup>하고 있음.

둘째, 법 제2조제1호의 환경기술 정의를 기존 산업 종류 나열방식에서 관련 법에 명기된 분류 인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률 제20822호

-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2026.3.19. 시행 예정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입법효율성 및 체계정합성을 위하여 법률 제20822호 제2조제1호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6)</sup>.

참고로,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 제20822호의 제2조제1호에 목을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셋째, ‘사업수행(경영활동)’에 대해 환경부는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범주를 규정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환경성에 대한 관리 대상(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sup>7)</sup>,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의·범위가 불분명하고,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도 운영 사례가 부재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 EU 등 해외에서도 기업의 사업수행(경영활동)에 대해

---

6) 이외에도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현행법 제34조 및 제37조 또한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환경부는 ‘서비스’(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타 경제주체 등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생산활동)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로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 직접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실증조사가 가능하므로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서는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국내 외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 현황 ]

| 구분    | 한국            | 미국                        | EU                            | 영국               | 프랑스                        |
|-------|---------------|---------------------------|-------------------------------|------------------|----------------------------|
| 규제 기관 | 환경부           | 연방거래위원회 (FTC), EPA, 주정부   | EU 회원국                        | 경쟁시장청 (CMA)      | 경쟁, 소비자문제 및 사기방지국 (DGCCRF) |
| 관련 규정 | 환경기술 산업법      | 연방상표법 (FTA)               | 불공정거래 관행 지침 (UCPD)            | 소비자보호 규정(CPRs)   | 소비자법                       |
| 적용 대상 | 제품            | 제품, 서비스                   |                               |                  |                            |
| 규제 수단 |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 행정처분, 행정심판, 법규명령 공표, 민사소송 | EU회원국 차원에서 결정, UCPD 위반의 경우 벌금 | 행정명령, 집행명령, 형사소추 |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
| 경영 활동 | 규제하지 않음       |                           |                               |                  |                            |

※ 출처: 환경부

## 2.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금지

현행법<sup>8)</sup>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
|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u>제품의</u>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① -----<br>----- <u>제</u><br><u>품 등</u> -----<br>-----<br>-----<br>-----<br>-----<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④ <u>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자회사를 통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u> |
| ④ ~ ⑥ (생략)                                                                                                                                 |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 제16조의2<sup>9)</sup>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거나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짐.

### [ 녹색기업 지정 현황 ]

| 년도  | ‘20 | ‘21 | ‘22 | ‘23 | ‘24.12 |
|-----|-----|-----|-----|-----|--------|
| 기업수 | 123 | 111 | 103 | 97  | 97     |

※ 출처: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의 평가 기준은 공통지표(정성지표, 정량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되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녹색경영체제 등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데<sup>10)11)</sup>,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 참고자료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

11)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 녹색기업 지정 기준 ]

| 구분            |      | 평 가 항 목   | 점 수  |      |
|---------------|------|-----------|------|------|
|               |      |           | 대기업  | 중소기업 |
| 공통지표          | 정성지표 | 녹색경영체계    | 100점 | 140점 |
|               |      | 자원·에너지    | 80점  | 80점  |
|               |      | 온실가스·환경오염 | 140점 | 150점 |
|               |      | 사회적 책임    | 70점  | 30점  |
|               | 정량지표 | 자원·에너지    | 120점 | 110점 |
|               |      | 온실가스·환경오염 | 120점 | 90점  |
|               |      | 사회적 책임    | 20점  | -    |
| 특성지표          |      | -         | 50점  | -    |
| 총점            |      | -         | 700점 | 600점 |
| 지정기준(총점의 80%) |      | -         | 560점 | 480점 |

※ 출처: 환경부

현행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 원단위 개선율<sup>12)</sup>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녹색기업 적합 여부 심사 시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일부에 대한 배출농도 측정을 제외<sup>13)</sup>

$$12) \quad \text{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원단위} \frac{\text{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text{최근 1년간 원단위}}{\text{기준연도 원단위(평균)}} \times 100$$

개선율(%) =

\* 기준연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 13)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하고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규모에 대한 평가 항목이 부재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더라도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이 제한되는 업종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제기됨.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7개소의 발전 사업자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음.

#### [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 현황 ]

(2025.6월 기준)

| 업체명               | 사용중인 화석연료 | 최초지정일      |
|-------------------|-----------|------------|
|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  | 천연가스      | 1999.02.04 |
|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 천연가스      | 1999.09.17 |
|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  | 천연가스      | 1996.01.03 |
|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발전본부  | 천연가스      | 2004.04.14 |
|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 석탄(무연탄)   | 2001.11.27 |
|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 천연가스      | 2004.10.26 |
| GS파워(주) 안양열병합발전처  | 천연가스      | 2004.03.15 |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

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 목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체제구축현황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기업을 원천적으로 녹색기업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장려수단이 사라지게 되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온실가스 발생량 등을 현저히 감축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화석연료 관련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918호, 이용우의원 대표발의)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sup>14)</sup>.

---

14) 다만, 의안번호 제2203918호의 경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로 규정하여 대상 범위가 일부 상이함.

### 3.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 추가

개정안은 녹색기업, 공공기관 등이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 ‘사업활동 중에 소비하는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비중’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2항제5호 신설)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br>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br><br>1. ~ 4. (생략)<br><u>&lt;신설&gt;</u><br><br>③ (생략) |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u>5. 사업활동 중에 소비하는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비중</u><br><br>③ (현행과 같음)<br><br><b>부칙</b><br><br>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sup>15)</sup>은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등<sup>16)</sup>을 작성·공개하도록 함.

이에 '24년 12월 기준 1,910개 기업 및 기관이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음.

다만, 최근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의 작성·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녹색기업 등이 작성·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기업이 사업활동 중에 소비하는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비중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경영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의 공개 여부 역시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 시장 상황, 에너지 조달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부는 환경정보의 구체적인 작성·공개항목은 환경부 고시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17)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도 해당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41 |

여 고시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2. 17., 일부개정]

[별표 2]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

1. 제조분야(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 대분류        | 구분                    | 공개항목                                                                                   | 비고                       |
|------------|-----------------------|----------------------------------------------------------------------------------------|--------------------------|
| 자원/<br>에너지 | 원부자재, 용수,<br>에너지 관리현황 |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br>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br>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br>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 -의무<br>-의무<br>-의무<br>-의무 |
|            | 신재생 에너지<br>관리현황       |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자율                      |

## ※ 참고자료

###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 (대상)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 체제의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정(3년 간)

☐ (운영체제)

- 환경부·환경청·환경산업기술원 중심 제도 운영
- 전국녹색기업협의회\*에서 녹색기업 총회·간담회 등 개최

\* 기업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자치조직으로, '97년 지역별 협의회 구성 및 '01년 전국 협의회 창립

| 구분       | 환경부                                                                 | 환경청<br>*수도권대기청 제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국녹색기업<br>협의회                                                                                    |
|----------|---------------------------------------------------------------------|--------------------------------------------------------------------------------------------------------|------------------------------------------------------------------------------------------------------------------------------------|--------------------------------------------------------------------------------------------------|
| 담당<br>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총괄 및 규정 개정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기업 심사</li> <li>○ 지정 및 지정 취소</li> <li>○ 변경 및 사후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경영보고서 검토</li> <li>○ 우수녹색기업 시상</li> <li>○ 녹색기업 제도 홍보</li> <li>○ 녹색기업 간담회 개최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개최</li> <li>○ 의견수렴·제도 주요사항 전파</li> </ul> |

☐ (현황) 97개소('24.12.), 대·중견기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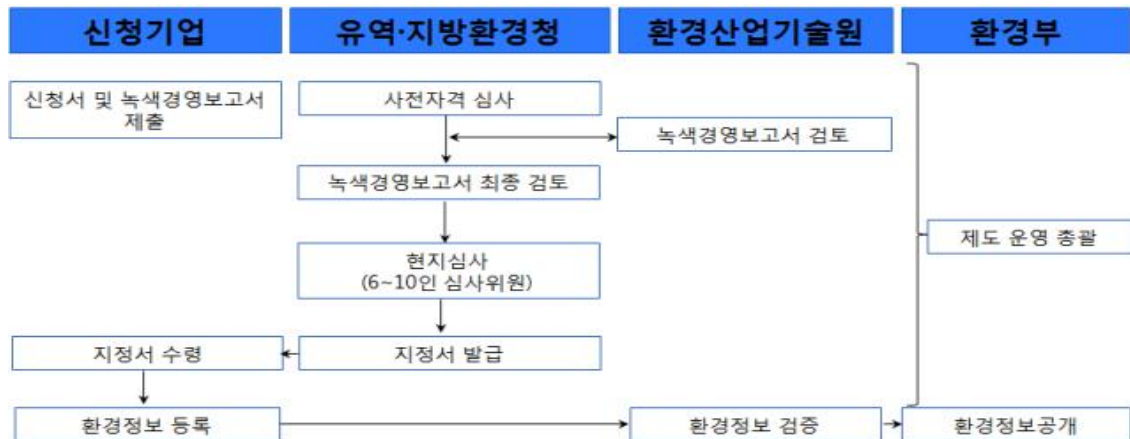
- 녹색기업 수는 '11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년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12 |
|-----|-----|-----|-----|-----|-----|-----|-----|-----|-----|-----|-----|-----|-----|--------|
| 기업수 | 210 | 204 | 202 | 195 | 179 | 164 | 152 | 139 | 131 | 123 | 111 | 103 | 97  | 97     |

☐ (경과)

- '1995.4 환경친화기업 출범(환경관리모범업소 폐지 → 환경친화기업)
- '2010.4 녹색기업 출범(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 명칭 변경)
- '2014.1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 → 환경청장)

□ (운영방식)



□ (지정절차)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녹색경영보고서 접수 시 환경청에서  
적합 여부 평가(시행령 제22조의7, 시행규칙 제33조의4, 운영규정 제6조)

1.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등
2.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3. 과거 3년간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4.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 적합한 경우 환경청장이 녹색경영보고서 검토·평가 실시
- ▶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보고서 검토를 기술원장에 의뢰
- ▶ 기술원장은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 제출
- ▶ 보완사항은 기업에 요구 및 수정 보고서 접수·재검토
- ▶ 환경청장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이면 녹색기업 심사단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타 항목 평가 실시
- ▶ 최종평가 결과 점수가 지정기준 이상인 경우 녹색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준) 평가항목은 업종에 따라 공통·특성지표로, 평가방법에 따라 정성·정량지표로 구분,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28호

**<녹색기업 평가기준>**

| 구분            |      | 평 가 항 목   | 점 수  |      |
|---------------|------|-----------|------|------|
|               |      |           | 대기업  | 중소기업 |
| 공통지표          | 정성지표 | 녹색경영체계    | 100점 | 140점 |
|               |      | 자원·에너지    | 80점  | 80점  |
|               |      | 온실가스·환경오염 | 140점 | 150점 |
|               |      | 사회적 책임    | 70점  | 30점  |
|               | 정량지표 | 자원·에너지    | 120점 | 110점 |
|               |      | 온실가스·환경오염 | 120점 | 90점  |
|               |      | 사회적 책임    | 20점  | -    |
| 특성지표          |      | -         | 50점  | -    |
| 총점            |      | -         | 700점 | 600점 |
| 지정기준(총점의 80%) |      | -         | 560점 | 480점 |

☐ (재지정) 지정기간(3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재지정 기간 3년)

☐ (지정취소) 환경청장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되, 경미한 위반(개선명령·조치명령)인 경우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는 필수사항이 아님

☐ (인센티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제5항 및 제6항

-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오염원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보고,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 검사 면제(대기·수질·폐기물 등)
- 녹색기업 협력사업·환경개선 관련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등

※자료: 환경부

## 2. 환경정보공개 개요

### □ (목 적)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 □ (대 상)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910개 기업·기관(소속사업장 4,084개소, '24.12기준)

※ 녹색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등

### □ (항 목) 업종에 따라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개~27개 항목\*으로 구성

\*기업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무/자율 구분)

< 정보공개 6개 유형 구분 >

| 유형        | 제조                    | 공공행정              | 교육서비스             | 보건                | 기타서비스             | 기타산업                  |
|-----------|-----------------------|-------------------|-------------------|-------------------|-------------------|-----------------------|
| 항목<br>(개) | 총 27<br>의무13,<br>자율14 | 총 19<br>의무8, 자율11 | 총 19<br>의무6, 자율13 | 총 19<br>의무7, 자율12 | 총 19<br>의무6, 자율13 | 총 27<br>의무13,<br>자율14 |

### □ (절 차) 대상기업 공고(환경부, ~4.30) → 정보 등록(기업·기관, ~6.30) → 검증(기술원, 7~12월)\* → 대국민 공개(환경부, ~12.31)

\* 서류평가(전수), 현장확인(표본)



< 제도운영 절차 >

| 시기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주체          |
|------------|-------------------------|-----------------------------------|-------------|
| 4월말<br>까지  | 정보공개 대상 범위 공고(시스템)      |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 환경부         |
| ↓          |                         |                                   |             |
| 5월말<br>까지  | 정보공개 대상 이의신청 접수 및 확정    | 운영규정 제4조 제5항                      | 기술원         |
| ↓          |                         |                                   |             |
| 6월말<br>까지  |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시스템)        |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                    | 대상<br>기업·기관 |
| ↓          |                         |                                   |             |
| 7~11월      | 검증(서류평가-전수, 현장확인-표본)    | 법 제16조의9 및<br>시행규칙 제33조의14        | 기술원         |
| ↓          |                         |                                   |             |
| 12월말<br>까지 | 대국민 공개(www.env-info.kr) |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 환경부         |
| ↓          |                         |                                   |             |
| 다음<br>연도   | 공개된 환경정보의 제공 및 활용       |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 제3항<br>및 운영규정 제18조 | 금융<br>기관 등  |

□ (추진 체계)

|                                             |            |               |
|---------------------------------------------|------------|---------------|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            |               |
| 사업 총괄<br>(공개대상 범위 선정 및 정보공개, 법·운영지침 제·개정 등)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ESG 경영지원실)                        |            | 심의위원회         |
| 제도 운영<br>(환경정보 검증, 시스템 구축·운영, 교육 및 홍보 등)    |            | 환경정보<br>비공개심의 |
| 공개대상 기업·기관                                  | 검증위원       |               |
| 환경정보 작성·제출                                  | 환경정보 현장 검증 |               |

□ (제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정보 수정 요청에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활용) **ESG** 평가를 하는 민간 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 및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 자료: 환경부

### 3.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별표 2]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 (6개 유형 중 제조분야)

#### 1. 제조분야(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 대분류           | 구분                 | 공개항목                                                                                                                                                                         | 비고                                            |
|---------------|--------------------|------------------------------------------------------------------------------------------------------------------------------------------------------------------------------|-----------------------------------------------|
| 기업개요          | 사업현황               |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 -의무                                           |
|               |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 -자율                                           |
|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 -자율                                           |
|               |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 -의무                                           |
| 자원/에너지        |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br>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br>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br>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 -의무<br>-의무<br>-의무<br>-의무                      |
|               |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자율                                           |
| 온실가스/환경오염     | 온실가스 관리현황          |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br>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 -자율<br>-자율                                    |
|               |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 12.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br>13. 대기·수질오염·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br>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br>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br>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br>17.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br>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의무<br>-의무<br>-의무<br>-의무<br>-의무<br>-의무<br>-자율 |
| 녹색제품/서비스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 19.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br>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br>21.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 (건수, 매출액 등)                                                                    | -자율<br>-자율<br>-자율                             |
|               |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    |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br>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br>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자율<br>-자율<br>-자율                             |
| 사회/윤리적 책임     | 환경법규 준수 현황         |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의무                                           |
|               | 환경정보공개             |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br>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 -자율<br>-자율                                    |